

의안번호	제2012-02호
상 정 년 월 일	2012. 3. 28. [제6차 국가통계위원회]

심  
의  
사  
항

#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개선방안

제 출 자	통 계 청 장
제출년월일	2012. 3. 28.



# 순서

I. 검토배경 .....	1
II. 현황 및 문제점 .....	2
III. 추진방안 .....	5
IV. 부처 협조사항 .....	11

<붙임 1>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연차별 추진전략

<붙임 2>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소요예산

<붙임 3> 2013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대상 통계(안)

<붙임 4>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실태 설문조사 결과

<붙임 5>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현황

<붙임 6> 주요국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현황



# 1 검토배경

- 사회전반에 걸쳐 통계의 중요성 인식과 분석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 수요 증가
  - 사회경제 현상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분석이 활발해지고 정부,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깊이 있고 복잡한 연구도 증가
  - 자연스럽게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도 마이크로데이터를 좀 더 편리하게 자세하고 세밀한 제공요구로 이동

< 통계청 소관 통계의 제공방법별 통계자료 이용현황 >

(단위 : 건)

구 분	2007	2008	2009	2010	2011
마이크로데이터*	2,020	2,275	3,077	3,883	5,139
매크로데이터**	135	121	120	126	150
List 데이터***	53	47	58	44	61
KOSIS 데이터	55	71	71	80	62
계	2,260	2,514	3,326	4,133	5,412

\* 원자료에서 조사오류 및 입력오류 등을 수정한 개별 단위(개인, 가구, 사업체 등)의 특성에 관한 자료로 통계작성 및 분석의 기본이 되는 개별 자료

\*\*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적 방법으로 집계한 자료

\*\*\* 통계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전에 작성되는 기구 또는 사업체 등 조사대상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정보가 수록된 자료

- 마이크로데이터는 가공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통계자료 중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국가적 자산임
  - 개별 정보를 보호범위 내에서 최대한 서비스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
  - 장기적으로 통계산업 육성에 활용하여, 통계가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

## 2 마이크로데이터 업무현황 및 문제점

### 1 업무추진 현황

#### □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추진

- 「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」을 수립하여 제4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('11.3.)

#### < 심 의 내 용 >

- 마이크로데이터 업무표준화('12년)
-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('12~'15년)
-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에 관한 법령 정비('11년)

-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계법 개정추진, 컨퍼런스 개최,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실태 조사 등 추진(참고)

#### □ 통계청은 이용자 요구에 따른 온라인, 오프라인으로 차별적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실시

구분	제공자료	공간적 측면	시간적 측면	제공조건
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 (MDSS 홈페이지)	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*	이용자가 원하는 장소(온라인)	24시간, 연중무휴	제한없음
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(MDAC)	인가된 마이크로데이터**	특정장소 (전국 7곳)	09:00~18:00	자료이용계획 사전승인 (이용목적, 자료명, 항목명, 최종결과물형태)
원격접근서비스 (RAS)		이용자가 원하는 장소(온라인)	24시간, 연중무휴	

\*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식별, 노출되지 않도록 자료처리한 익명화된 자료

\*\* 자료제공 범위가 벗어나 사전 인가절차를 거쳐 특정한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자료

**① 통계법 개정**

-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법제화 및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통계법 개정(국회계류 중)

**<통계법 개정안>**

**제29조의2 (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)**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통계자료의 보유·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37조(위임 및 위탁)**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2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

**② 마이크로데이터 실태조사('11.10.)**

\* 374개 통계작성기관 796개 승인통계를 대상으로 1달간 실시(10.14.~11.4.)

- 조사대상 796종 중 543종(68%)만이 보관, 435종(54.7%)이 단기 및 대행기관이 보존 하고 있으며, 보관형태도 220종(40.6%)이 PC 파일로 관리
- 부처별로 살펴보면, 대부분 부처가 보관하고 있으나 DB 형태 구축은 복지부, 산림청(70%), 농식품부(69%) 순임

**③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컨퍼런스 개최('11.11.)**

- (개요) 마이크로데이터 담당자, 이용자 등을 포함한 166명이 참석하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증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
- (주요내용) 마이크로데이터 관리비스 실태 및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추진계획, 활용증진 방향에 대한 논의

## 2

## 문제점

### □ 정도 높은 자료 분석 및 연구를 위한 더욱 세분된 자료이용 불편

- \* 통계청의 「2010년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설문조사」 결과, 52.8%가 현재보다 더 세분자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, 「2011년 통계청 고객만족도조사」 결과에서도 개선사항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한 자료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시

### □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두 개 이상의 자료를 연계한 2차\* 통계자료 생산에 매칭 등 기술적·시간적 제약 존재

- \* 2차 자료 활용의 이점 : 신규통계생산, 응답부담감소, 비용절감, 통계의 품질 향상
- \*\* 2011년 통계청에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자료연계 분석 경험이 36.7%였으며, 향후 다양한 분야의 2차 자료를 요구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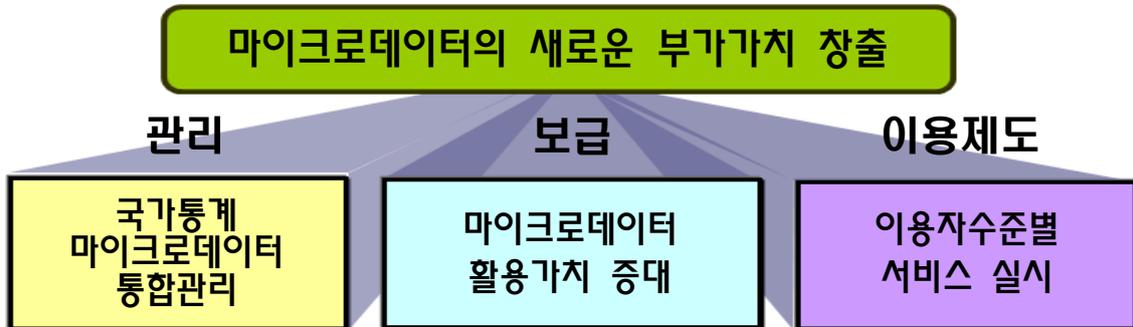
### □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자가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\*이 있지만 법적·제도적 제약 존재

- 법규정과 자료 활용증대 사이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외부에서는 신속하고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에 대한 부족함 제시

### □ 마이크로데이터가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원하는 자료에 접근이 곤란

- 376개 통계작성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를 기관별로 제공여부, 제공범위 등이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과 하나의 접점에서 제공될 필요

### 3 추진 방안



#### 1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측면

☞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

##### □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

○ 마이크로데이터 표준화의 기본방향 및 저장구조·관리, 서비스 표준화 등을 포함한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

- 국제표준(DDI\*)을 반영, 마이크로데이터 국제화 기반도 마련

\* DDI(Data Documentation Initiative): 마이크로데이터·메타데이터 단계의 자료처리에 대한 국제 표준

○ 단계적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DB 구축('13~'15년)

-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시스템 기반구축 및 자료입력('13년)

- 마이크로데이터 DB 확대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('14~'15년)

□ 원스톱 서비스 포털 구축 및 통합 서비스 실시

○ (구축대상)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성이 높은 조사통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서비스 실시

- 범정부통계시스템\*을 통해 구축한 조사통계 42종을 대상('13년)으로 우선 실시하고, 이후 대상통계는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

\* 통계의 생산에서 공표까지 통계작성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제3차('10.12) 국가통계 위원회에서 심의

○ (제공내용) 통합대상 통계의 경우 조회, 다운로드 및 활용 등을 원스톱 제공하고, 비대상 통계의 경우 자료 활용방법 제공

□ 국가승인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 관리, 제공 및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“국가통계 자료제공위원회 (가칭)” 구성 및 운영

○ 자료제공위원회의 위원 구성, 의결범위 및 운영규칙을 명시한 운영규정 제정

○ 마이크로데이터 공동 활용의 대원칙 정립 등 일관된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체계 마련

- 마이크로데이터 보관, 제공, 활용, 수수료부과 및 비밀보호 등

## 2 마이크로데이터 보급 측면

### ☞ 마이크로데이터 활용가치 증대

#### □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및 제공 의무화 모색

- 「정책관리연구용역 규정」 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제출 시에는 반드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결과를 포함토록 하는 규정 신설 추진

#### ☞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개정(안)

제22조 (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)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 일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, 그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중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용역의 보고 및 공개 시에는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마이크로데이터 분석결과가 정책적으로 활용된 경우, 인센티브 지원 모색

- 최종 결과물이 등재학술지에 수록된 경우, 신뢰가 검증된 전문가로 간주하여 향후 자료제공 범위를 확대하고, 이용요금도 인하

#### □ 마이크로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더욱 증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

- 응답자의 사생활(privacy) 보호 차원을 넘어 자료 활용을 최대화 한다는 수준으로 제도개선 및 발상의 전환 필요

- 연구자의 연구를 위해 적극적 자료지원을 하되, 산출물을 엄격히 체크하고, 비밀보호문제 등 위반사례 발생 시 엄격히 처벌

☞ **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(MDAC)를 통한 자료제공 범위 확대**

- 현재 통계조사별로 제공방법(MDSS/MDAC)에 따른 자료제공의 범위를 MDSS(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)의 경우만 운영하고, MDAC의 경우는 폐지하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을 최대화

☞ **“국가통계자료제공위원회(가칭)” 및 통계청의 “통계자료제공심의회”에 민간인을 포함한 운영방안 검토**

- 통계작성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을 원활하게 조율하기 위해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“국가통계자료제공위원회(가칭)” 및 통계청의 “통계자료제공심의회”에 민간인을 참여(공무원, 민간인 반반) 시키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

□ **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2차 자료 생산 및 제공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**

-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 목적 및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**다양한 2차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** 자료제공 기관과 연구자 사이에 2차 자료 생산전담기관\*으로 “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센터”(가칭)를 신설

\* 캐나다의 경우 데이터 연결을 담당하는 기관(Agency's policy on Record Linkage)이 별도로 존재

### 3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제도 측면

#### ☞ 이용자 수준별 서비스 실시

#### □ '기관 대 개인' 에서 '기관 대 기관'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방식 다양화

- 연구 및 교육기관과 협약\*을 맺어 협약 기관 내에 마이크로데이터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

\* 미국 노동통계국의 BLS Agency Agreement : 협약기관 내 BLS가 지정한 장소에서 기관장의 책임 하에 소속 학생 및 연구자들이 마이크로데이터(Licensed File만 해당)를 이용

\*\* 캐나다 연구데이터센터 프로그램(RDC, The research Data Centres Program) : 대학의 보안유지 시설 내에 통계청 직원이 관리하는 센터를 두고 통계청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센서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

#### ☞ 외부 마이크로데이터 센터 운영(안)

- 대상 :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, 연구소, 대학 등
- 설치장소 : 통계청이 지정한 협약기관 내 물리적 환경이 기반 되는 장소
- 협약기간 : 기본 1년(연장 및 재계약 가능), 연간사용료 지급
- 자료제공범위 : 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, **인가된 마이크로데이터**
- 협약기관내 책임자(정부의 기관장, 대학의 부총장, 연구소의 CEO급) 및 실질적 책임자 지정
  - 기관내 책임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민·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의무
  - 실질적 책임자는 통계청과 사용자 사이의 중간연락담당
  - 비밀보호, 보안 유지의 책임 및 자료이용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
  - 최종결과물 통계청으로 제출
- 자료에 따른 이용방법
  - 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의 경우, 기관 당 ID 5개 부여
  - 인가된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의 MDAC 및 RAS와 동일하게 운영(통계청은 이용기간 동안에 현장점검)

□ 신뢰가 검증된 전문가에게는 자료제공 범위 확대 및 절차간소화

- 통계청(산하기관 포함)과 공동으로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개인의 경우, 통계청 직원 수준\*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

\* 보존용 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료제공 부서에 신청

□ 잠재고객 유인을 위한 홍보 강화

-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내역을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\*

\* 뉴질랜드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한 기관과 사용하는 목적, 발간물 등을 on-site / off-site로 나누어 인터넷에 게시, 호주는 분기별 뉴스레터 발간

- 통계조사 간행물에 마이크로데이터 신청방법, 이용절차 등을 자세히 수록하여 관심 유도

- MDSS 홈페이지에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(SAS, SPSS 등)의 예시를 게시하여 초급 이용자 편의 도모

□ 이용목적별 또는 기관별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가격을 차등화 하고, 향후 마이크로데이터 무료 제공도 검토

- 자금지원연구, 소득창출 등 경우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산정하거나, 대학이나 연구소 등 기관단위로 일정기간을 정해 비용 (연회비)을 산정하는 방식 도입

\* 호주는 정부와 대학(32개)이 연단위 협약을 맺어 CD-ROM과 RADL(Remote Access Data Laboratory Service Expanded)에의 접근권 보유

\*\* 캐나다 Data Liberation Initiative 제도 :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연간비용을 부담하고 학생과 직원들이 무제한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

- 최신자료를 높은 가격으로 받는 등 마이크로데이터 생산연도별로 가격을 달리 책정

\* 호주의 경우, '83년 이전 \$1,100, '84~'96년 \$5,500, '97년 이후는 \$8,000

## 4 부처 협조사항

### ① 통계작성기관 마이크로데이터 실태파악에 적극적 협조

-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ISP 기간 중 통계작성기관별 마이크로데이터 상세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및 전문가 방문(4~5월)에 적극적 협조 요망

### ② 통계작성기관 T/F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협조

- T/F 대상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
  -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ISP 기간 중 2013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대상기관(18개)<붙임3 참조>을 대상으로 T/F 운영 예정

### ③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공동 활용에 협조

- 각 부처는 ISP 결과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통계로 선정될 경우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에 협조 부탁

### ④ 각 부처의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에 대한 관심 요청

- 각 부처에서 생산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가 통합관리되기 전 까지 유실·변형되지 않도록 관리인력 지원 및 규정 마련 등 노력 필요

### ⑤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지원(붙임2 참조)

# 붙임 1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연차별 추진전략

기본계획(ISP) 수립 및 환경조성		
1단계 (2012년)	마이크로데이터 표준체계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표준화 체계 정립 및 지침 수립</li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수집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</li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분류, 항목의 표준화</li> </ul>
	통합관리 공감대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T/F 구성 및 운영</li> <li>● 통계작성기관 마이크로데이터 개별 이용방법에 대한 종합 안내 실시</li> <li>● 통계법 개정</li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공동활용 대원칙 수립</li> <li>●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컨퍼런스를 통한 홍보</li> <li>● MDSS 포털을 통한 통합관리 홍보</li> </ul>
마이크로데이터 통합 및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		
2단계 (2013년)	통합시스템 기반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DB 설계 / 메타 DB 표준 구축</li> <li>● 통합입력 기능 구축</li> <li>● 원시통계자료 입력 시범구축</li> <li>● 초기인프라 도입</li> </ul>
	통합서비스 기반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메타데이터 관리기능</li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등록관리 기능</li> <li>● 통계정보 조회 및 분석기능</li> <li>● 연계기능</li> </ul>
	체제 기반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서비스 방안 협의 및 공동 활용 체제 기반 구축</li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직 정비</li> <li>●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제공위원회 조직 구성</li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보관·제공·공동활용·수수료·비밀보호 등에 대한 통계작성기관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</li> </ul>
마이크로데이터 통합 활용 서비스 활성화		
3단계 (2014년)	통합 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DB 고도화</li> <li>● 통계작성기관에 보급 배포 및 지원</li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입력 확대</li> </ul>
	서비스 안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통계 이용자의 분석기능 강화</li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보안기능 구현</li> <li>● 활용사례 공개 기능 확대 및 대국민 시범서비스 실시</li> </ul>
	체제 안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지침절차 및 표준화 배포 확대</li> <li>● 운영예산 및 인력 확보</li> </ul>
마이크로데이터 통합 활용 서비스 고도화 및 안정화		
4단계 (2015년)	통합 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표준화 및 메타 DB 표준 배포 확대</li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입력 확대 및 인프라 확대 도입</li> </ul>
	서비스 고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통계 이용자의 심층 분석기능 강화(고도화)</li> <li>● 타 시스템의 연계서비스 및 대국민 서비스 실시</li> </ul>
	체제 안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통계작성기관에 지침절차 및 표준화 배포 확대</li> <li>●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관리 실시</li> <li>● 마이크로데이터 품질관리 실시</li> </ul>

**붙임 2**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소요예산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	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개발 용역비	SW개발비		1,752	598	598
	시스템운영환경 구축비		-	-	-
	DB구축비		-	4,343	923
	소 계		1,752	4,941	1,521
지침/절차 및 표준화개발비	지침/절차 개발비	150	238	190	57
	표준화 개발비	150	238	190	57
	소계	300	476	380	114
장비 구입비	인프라 구축		-	-	-
	스토리지 증설비		-	-	520
합계		300	2,229	5,323	2,156
총 합계		9,713			

\* 2013년 DB 구축 및 인프라는 나라통계 사업에서 통합하여 구축

**붙임 3** 2013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대상 통계(안)

구분	기관	부서
통계작성기관 (18개 기관)	• 기획재정부	- 경제분석과
	• 환경부	- 정보화담당관실
	• 행정안전부	- 선진화담당관실
	• 교육과학기술부	- 교육통계과
	• 문화체육관광부	- 정보통계담당관실
	• 지식경제부	- 행정관리담당관실
	• 국토해양부	- 정보화통계담당관실
	• 보건복지부	- 정책통계담당관실
	• 고용노동부	- 노동시장분석과
	• 산림청	- 정보통계담당관실
	• 여성가족부	- 기획재정담당관실
	• 서울특별시	- 정보화기획담당관실
	• 부산광역시	- 평가담당관실
	• 전라남도	- 법무통계담당관실
	• 경상남도	- 정보통계담당관실
	• 한국은행	- 통계기획팀
	•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	- 수산경제연구원실
	• 대한건설협회	- 조사통계팀

## 붙임 4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실태 설문조사 결과

### ▷ 조사 개요

- 조사일시 : 2011. 10. 14. ~ 2011. 11. 4.
- 조사대상 : 2011.10.1.기준 374개 통계작성기관 796개 승인통계 (통계청 54종 제외)

### ▷ 주요 결과

- **(보유여부)** 조사대상 796종 중 68%(542종)가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중이나 영구보존은 13%(107종)에 불과, 단기 및 대행기관 보존 54.7%(435종)
- **(보관형태)** 마이크로데이터 보유통계 542종 중 PC파일로 관리 하는 경우는 40.6%(220종), DB형태로 관리중인 통계는 41.5%(225종)에 불과
  - \* PC에 파일로 관리할 경우 담당자 변경 시 유실되거나 메타데이터 등 관련정보가 없어 무용지물이 되는 실정임
- **(전담직원 등)** 보유통계 542종 중 마이크로데이터의 관리지침이 없거나(73%, 381종),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(67%, 335종)가 다수
- **(일반이용자 제공)**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232종 중 일반 이용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경우는 41.4%(96종)에 불과
  - 그 외에는 특정회원(41.4%, 96종)이나 특정기관(17.2%, 40종)에만 제공
- **(제공절차)** 대외제공시 사전에 정해진 내부지침(36%)이나 마이크로데이터 대외제공심의위원회 결정(5%)을 따르는 경우도 있으나,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(22%)에 의하거나, 무조건 제공(26%)하는 경우도 다수
  - \* 적절한 기준 및 절차 없이 제공시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발생 우려
- **(비밀보호)** 외부제공시 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는 경우는 44%이며, 간접유추정보까지 제거는 22%에 불과, 그 외에는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대외제공
  - \* 담당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료가 제공되거나, 제공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공되고 있음

## 붙임 5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현황

### ▷ 제공 원칙

-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한 없이 제공

### ▷ 관리 및 제공 근거

- 통계자료제공규정(훈령), 보존용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지침(예규)

### ▷ 제공 통계

- 소관통계 52종 중 자료제공이 가능한 38종\* 통계에 대해 조사표 및 명부자료 제공

\* 사업체 10종, 인구 5종, 가구 10종, 농어업 12종, 기타 1종

- 비밀보호기법을 적용한 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\*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인가된 마이크로데이터\*\*로 구분

\* 자료이용자를 위해 사전에 만들어져 제공되는 익명화된 자료

\*\* 사전 인가를 거친 특정한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자료

### ▷ 제공 방식

-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(MDSS)\*,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\*\*, 원격접근서비스(RAS)\*\*\*, 쇼핑몰을 통해 제공

\*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추출,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

\*\* 이용자가 인가된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, 가공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 (한국 통계진흥원 등 7개소)

\*\*\*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, 가공

### ▷ 제공 비용

- 정부기관 및 지자체는 무료, 민간기관은 유료로 제공

## 붙임 6 주요국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현황

구분	제공방법	자료신청절차	제공후 관리
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CD-ROM</li> <li>○ On-line : MDSS</li> <li>○ On-site : 서울, 대전 등 7곳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On-line : 회원가입후 이용</li> <li>○ On-site : 이용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제출</li> <li>○ 자료제공심의회 승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규정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</li> <li>○ On-site : 비밀보호의무 준수 여부 및 통계적 신뢰도 검토</li> </ul>
미국 센서스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CD-ROM</li> <li>○ On-line : Factfinder, DataFerrett 등</li> <li>○ On-site : usRDC 13곳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On-line : 회원가입후 무료 또는 유료 이용</li> <li>○ On-site : 가까운 usRDC에 방문⇒제안서와 이력서 제출⇒심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공규정 위반시 징역 5년 또는 \$250,000 이하의 벌금 혹은 양벌</li> <li>○ 결과반출 시 직원 승인필요</li> <li>○ 논문 등 최종성과물에 대해 엄격히 관리</li> </ul>
캐나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Remote Data Access</li> <li>○ DLI : 교육기관이 연간비용을 부담하고 이용</li> <li>○ On-site : caRDC 28곳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DLI : 마이크로데이터 허가협정 필요, 검토위원회⇒통계청장⇒장관승인</li> <li>○ On-site : 연구계획서⇒선별검토위원회 심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\$5,000이하의 벌금 혹은 양벌</li> <li>○ On-site : 중간성과물 통계청의 승인 후 반출, 최종결과물 제출</li> </ul>
호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CD-ROM</li> <li>○ Internet : RADL, ABSDL(전문형 자료, 호주통계청 내)</li> <li>○ ABS-AVCC CURF 협약 : 대학과 협약을 맺어 이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양식작성⇒소속기관의 승인⇒통계청에 승인요청⇒신청결과 통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무 위반 시 CURF 접근 권한 박탈, \$13,200이내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</li> <li>○ 연구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물 검토</li> </ul>

\* usRDC(U.S. Research Data Center) : 특정한 장소에 설치된 특정한 단말기로 데이터 접근

\* caRDC(Canada Research Data Center) : 통계청 직원 1명이상 상주

\* DLI(Data Liberation Initiative) : 캐나다 교육기관이 연간비용을 부담하고 학생과 임원이 무제한으로 마이크로 데이터 사용

\* CURF : Confidentialised Unit Record File, RADL : Remote Access Data Laboratory, AVCC : Australian Vice Chancellors Committe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통계청 통계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2401